

+ ☁ ☀

보다 즐겁게, 보다 의미있게, 보다 전문적으로!

2021 대구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

북구자원봉사센터(665-2286, 2288)

접수기간 : 2.15.(월)~3.10.(수)

접수처 : E-mail(bukguvt@hanmail.net)

신청양식 : 북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

(bukguvt.or.kr) 공지사항 확인

자격요건

- 접수일 현재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회원이 20명 이상인 단체(소속 : 대구광역시 복구)
- 일반운영비와 물품구입 등 자본적 경비 등을 자부담 할 수 있는 단체
- 신규단체 우선

지원제한

- 2회 이상 기지원한 단체
- 국가, 지자체에서 동일(유사)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
- 자원봉사단체가 아닌 복지관, 센터 등 기관·시설
- 단순 행사성 활동, 단순 노력 봉사
- 인건비, 운영비,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적 경비

지원규모

- 5개 단체(사업)이상 선정 예정
- 단체(사업)당 400만원 내 지원
- 자원봉사활동 사업비(활동 제반 경비, 소규모 재료비 등) 지원
- 신청사업비 중 인건비, 운영비, 시설(부대)비, 장비구입(자산취득)비 등의 자본적 경비는 제외

사업범위

『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』제7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내 사업

-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
 - 지역사회 개발·발전에 관한 활동
 -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
 -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에 관한 활동
 -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
 -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
 - 재난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
 - 문화·관광·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
 -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
 -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
 -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
 -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
- ※ 단,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제외

사업기간

- 2021.4.1.~9.30.(6개월)

제출서류

- 공모사업신청서, 단체소개서, 공모사업계획서

심사관련

- 3월중 심사위원회 개최
- 선정기준 : 독창성, 효율성, 타당성, 실현가능성, 파급효과, 신청예산의 타당성, 자부담의 적정성, 전문성, 최근 자원봉사 실적 등
- 결과발표 : 3월 23일(화) 예정/개별통지
- 기 지원횟수마다 감점 있음
- 신청사업비 중 인건비, 운영비, 자산취득비, 자본적 경비는 제외
- 사업비 대비 자부담이 현저히 적은 경우 감점 고려 대상
-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다양한 비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 예정
- 우선검토사업
- 1.안녕한사회(안전한 사회, 안부 묻는 사회, 안심하는 사회, 기후변화 대응 등)를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활동 프로그램
- 2. 베이비부머세대 참여 프로그램

프로그램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

- 단체명, 등록사항 등은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사항 위주로 기재
- 총 사업비(신청보조금 및 자부담) 확인
- 직인 및 대표자인 필히 날인

단체소개서 작성 유의사항

- 회원수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사항 기재
- 조직 내 임원현황은 단체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
- 2020년도 주요 활동 및 예산 작성
-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은 공모사업 포함한 단체 전체 활동 계획 작성

프로그램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유의사항

- 페이지 수 제한없음
- 지정된 양식 및 신청서상의 작성방법(파란색 글씨) 확인하며 작성
- 세부추진계획은 공모사업 종료 후 활동실적과 연계되므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작성
- 코로나19상황에 맞추어 비대면 및 소규모 활동이 가능한 방안 구상
-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시 2021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회계처리기준을 준수
- 사업신청서식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, 사업심사·선정 시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있게 작성

사업비 편성 기준 및 기타행정사항

- ❖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(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도 있음)
- ❖ 본 사업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**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경비 지원 사업**이므로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에만 지출(상근직원의 급여나 사무실 임차료, 연구용역비, 위탁사업비, 기타 사무실 설비 및 장비·비소모성물품 구입(자산취득)비, 공과금 등 지출 불가)
- ❖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경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
- ❖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화된 예산 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,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(예비비,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)
- ❖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 편성
- ❖ 동일한 목에 재원을 나누어 편성 불가(예를들어, 버스임차료에 소요되는 경비(100만원)을 보조금 50만원, 자부담50만원으로 나누어 편성 불가함)
- ❖ 보조금과 단체 자부담 예산은 통장과 회계장부를 **별도** 관리
- ❖ 사업추진기간은 4.1.~9.30.이며, 대상사업 선정 심사 후 사업비 금액은 **조정될 수 있음**

사업비 편성 기준 및 기타행정사항

- ❖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,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 개설
- ❖ 기존 보조금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잔고를 **0원으로** 만든 후 사용
- ❖ 대표자 등 개인명의 계좌를 보조금, 자부담 통장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지출내역을 개인 연말정산에 정보제공하지 않도록 유의
- ❖ 교부결정시 자부담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**자부담 전액 입금 상태를 확인받은 후** 사업비 지출
- ❖ 자부담도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, 자부담 집행잔액도 원칙적 반납대상
- ❖ **지출은 체크카드만** 사용하며, 부득이한 경우 자원봉사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반드시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 조치(현금지출 불가)
- ❖ 체크카드 결제 시 연말정산, 포인트 적립, 인터넷 할인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바람
- ❖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강사 소득세 등은 센터에 문의 후 진행하여야 함

〈사업비 환수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〉

- ✓ 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
- ✓ 사업비 정산액이 당초 제출한 사업비 집행 계획보다 크게 감소한 경우
- ✓ 집행증빙서류(세금계산서 등)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
- ✓ 정산시의 자부담금액이 보조결정시의 자부담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- ✓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,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
- ✓ 검사(확인)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



2021 대구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

설명회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.

자원봉사단체의 많은 지원바라며,

기타 문의사항은 복구자원봉사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